

서울시보

Hi Seoul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2980호(그2) 2010. 06. 10.(목)

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광화문광장의 이순신장군 기념관 '충무공이야기' (2010.4.28 개관)

기관의 장		공 람								
선 람	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홍보기획관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 731-6847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0-113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

제2010-113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3

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1136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6월 10일
서울특별시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민선5기 시정의 핵심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, 실·본부·국간 분장사무를 통합·조정하는 등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본청 실·본부·국 규정 : 1실 8본부 5국

- 신설기구 : 문화디자인총괄본부, 도시안전본부, 교육지원국
- 폐지기구 : 균형발전본부, 문화국, 물관리국
- 기구 기능 조정에 따른 조정(신설·폐지·확대·축소 등)
 - ▶ 경영기획실+감사관(평가) ➡ 「기획조정실」
 - ▶ 디자인서울총괄본부+문화국 ➡ 「문화디자인총괄본부」
 - ▶ 경쟁력강화본부+마케팅업무 ➡ 「경제진흥본부」
 - ▶ 복지국+보건·건강업무 ➡ 「복지건강본부」
 - ▶ 교육업무(교육지원, 평생·창의교육) ➡ 「교육지원국」
 - ▶ 행정국(방재기획)+도시교통본부(도로관리)+물관리국+도기본(시설·교량안전)+소방재난본부(지진, 시설물점검) ➡ 「도시안전본부」
 - ▶ 주택국+균형발전본부(뉴타운사업) ➡ 「주택본부」
 - ▶ 도시계획국+균형발전본부(도심활성화업무) ➡ 「도시계획국」
 - ▶ 도시기반시설본부(교량·시설안전 건설업무)+동대문디자인파크·신청사업부 ➡ 「도시기반시설본부」

나. 한시기구 정비(제19조) : 「디자인서울총괄본부」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 :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2171-2151, FAX : 731-6309, E-mail : sola2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1137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6월 10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민선5기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총 정원을 16,057명에서 16,056명으로 1명 감축하고, 본청사업소간 정원 이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 - 가.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폐지에 따른 정원감축(1명)
 - 일반직 3급 1명
 - 나. 기구조편에 따른 정원 이관(3명)
 - 4급(3명) : 본청 △3 ⇒ 사업소 +3
3. 의견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2171-2151, FAX : 731-6309, E-mail : sola2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